

2024 농구 i-League 규정

제1조(명칭)

- ① 지역리그 명칭은 '2024 (지역명) 농구 i-League'라 한다.

제2조(목적)

- ① 본 규정은 지역리그의 원활한 진행과 유·청소년 농구인구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2024 농구 i-League」 규정의 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최, 주관, 후원)

- ① 주 최 : 대한체육회
- ② 주 관 : 대한민농구협회, 시도농구협회, 시군구농구협회
- ③ 재정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 후원기관(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은 추가할 수 있으나, 대한민농구협회와 협의 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후원 및 협찬 적발 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한다.

제4조(기간)

- ① 본 리그는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각 지역별 7라운드 이상으로 운영한다.
- ② 운영지역 상황에 따라 일정변경은 가능하나, 경기일로부터 최소 7일전까지 대한민농구협회로 일정 변경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2024 운영매뉴얼 내 양식 첨부

제5조(장소)

- ① 지역별 행정총괄관리자와 리그관리자로 구성된 운영본부에서 계획·제출한 체육관의 농구경기장에서 개최한다.
- ② 개최지역에서 4라운드 이상 진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내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 ③ 경우에 따라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나, 경기일로부터 최소 7일전까지 대한민농구협회 대회운영과로 일정 변경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참가자격)

- ① 본 리그는 대한민농구협회 통합경기정보시스템(www.kba-il.kr)을 통해 시도농구협회와 대한민농구협회의 승인을 받은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경기원)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 ② 당해 연도에 전문체육선수로 등록한 학생은 참가할 수 없다.
- ③ 등록 유효기간은 당해 연도 등록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말일까지이며, 이적/탈퇴/해체에 따른 출전 제한사항은 등록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적용된다.

※ 전년도 전문체육선수로 등록한 학생은 당해 연도 3월 1일부터 선수 등록 및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

- ④ 선수의 이적으로 인하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기간은 1년이며, 적용예시는 아래와 같다. 단, 팀(또는 클럽) 해체로 이적하는 경우에는 타 팀(또는 클럽) 이적 승인된 날부터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이적 신청일 또는 전 소속팀 탈퇴일 중 빠른 날짜	경기 출전 가능일
2024. 3. 1.	2025. 3. 1.

- ⑤ 모든 종별에 1인 1종별 출전만을 허용한다. (중복출전 절대불가)
- ⑥ 참가팀은 리그 시작 최소 7일전까지 통합경기정보시스템에서 선수등록·승인-참가신청을 완료하고, 리그 시작일까지 시도농구협회에 참가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참가비는 팀당 일금 오만 원 정(W50,000)으로 시도농구협회에서 취합하여 대한민국농구협회 지정 계좌(신한은행 100-035-973211, 예금주 : (사)대한민국농구협회 권혁운)로 협회가 지정한 날까지 납부 완료한다.

제 7조(참가신청)

- ① 지역별 행정총괄관리자는 통합경기정보시스템에 리그 개설 및 운영일정을 리그 시작일 최소 10일 전까지 등록하여야 하고, 참가팀은 리그시작일 최소 7일 전까지 통합경기정보시스템에서 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팀 별 등록 인원 및 나이제한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구분	종별	나이제한	선수	지도자		
초등부	U8부	2016년생 이후 출생자	6명 이상 12명 이하	1명 이상		
	U10부	2014년생 이후 출생자				
	U12부	2012년생 이후 출생자				
	여초부	2012년생 이후 출생자				
중학부	U15부	2009년생 이후 출생자				
	여중부					
고등부	U18부	2006년생 이후 출생자				
	여고부					

제 8조(리그의 취소)

- ① 본 리그의 참가팀 수 미달,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상황 발생 등으로 개최 불가능할 시, 해당 지역 운영본부 재량에 따라 리그 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본 리그의 운영지침을 위반하는 경우와 해당 리그 부당행위 등이 발생되면 대한민국농구협회 직권으로 리그를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

제 9조(경기규칙 및 시합구)

- ① 본 리그는 「FIBA 농구경기규칙」을 적용하며, 아래 내용 외 지역별 특별한 사항은

각 지역별 운영본부에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로컬룰은 적용 불가

- ② 초등부와 여중부, 여고부는 6호볼을 사용한다.
- ③ U15부, U18부는 7호볼을 사용한다.
- ④ 시합구는 대한민국농구협회가 각 지역에 제공하는 ‘몰텐’ 브랜드의 공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지원된 시합구 소진 시(분실, 훼손 등) 명시된 공인구를 자체 구매하여 사용한다.

제 10조(대진, 리그구성, 일정의 결정)

- ① 리그의 대진, 리그구성, 일정은 담당 시도농구협회와 시군구농구협회에서 결정한다.
- ② 경기 일정의 경우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항력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③ 참가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주간(09:00~18:00)경기 운영을 권장한다.

제 11조(경기시간 및 경기규정)

- ① 경기시간 및 경기규정은 본 규정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초등부(U8, U10, U12, 여초부), 중학부(U15부, 여중부)와 고등부(U18부, 여고부)는 전·후반 10분 경기로 한다. (연속경기는 10분간 휴식)

구분	종별	경기시간	사용구
초등부	U8부	전·후반 각 10분	6호볼
	U10부		
	U12부		
	여초부		
중학부	U15부		7호볼
	여중부		6호볼
고등부	U18부		7호볼
	여고부		6호볼

- ② 모든 경기는 all-dead로 하며, 연장전은 2분으로 한다.
- ③ 작전타임은 전반 2회, 후반 2회이며, 벤치에서 데드상황에서만 요청할 수 있으며, 하프타임은 2분으로 한다.
- ④ 참가신청서 명단에 없는 사람(감독, 코치, 선수, 학부모 등)은 벤치에 착석할 수 없다.
- ⑤ 경기 예정시간보다 10분 지각 시에 몰수 패를 선언한다.
- ⑥ 경기 시작시간이 지나고 10분 이내에 출전 시 T파울과 자유투 1구로 주고 점프볼로 시작한다.
- ⑦ 몰수패는 20:0으로 한다.

제 12조(파울 규정)

- ① 팀 파울은 전·후반 각각 8개 이상 시 자유투 2구가 주어진다.
- ② 개인파울 5개 이상은 퇴장으로 한다.
- ③ 상대팀 공격 시 과도한 고함으로 공격방해 시 1차 경고, 2차 T파울을 선언한다.
- ④ 한 선수가 테크니컬 반칙(T파울) 1개와 언스포츠맨라이크 반칙(U파울) 1개를 받

있을 때에는 해당 경기의 남은 시간동안 퇴장 당한다.

- ⑤ 감독, 코치 등은 과도한 고함이나 경기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과도한 행위나 과도한 어필에 대해서 심판은 T파울을 줄 수 있다.
- ⑥ 제 11조 및 제 12조 이외 모든 파울, 경기 규정은 FIBA 룰을 준수한다.

제 13조(종별 규정) 종별 규정은 다음과 같고, 모든 종별에 1인 1종별 출전만을 허용한다.

- ① 초등부(U8, U10, U12, 여초부)
 - 초등부의 경우 3점슛과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은 없으며, 점프볼은 경기개시와 매 연장전 시작에 하고 얼터너티브 방식으로 진행한다.
 - 공격 제한시간은 30초로 한다.
 - U8부의 경우 트레블링 3스텝을 허용한다. (단, 프런트 3점라인 내는 불허, 악의적인 경우 경고)
 - U8부의 경우 3초와 5초룰 바이얼레이션은 없다.
 - U8부의 경우 자유투 시 볼이 손을 떠나면서 동시에 라인 오버는 허용한다.
 - 지역방어를 금지한다.
- ② 중학부(U15, 여중부)
 - 중학부는 3점슛과 하프라인 바이얼레이션 규칙이 적용되고, 그 외의 모든 규칙도 FIBA 룰을 적용한다.
 - 지역방어를 금지한다.
- ③ 고등부(U18, 여고부)
 - 모든 경기규칙은 FIBA 룰을 적용한다.

제 14조(벤치 착석 및 지도행위)

- ① 팀 벤치에는 감독, 코치만 착석할 수 있다.
- ② 본 리그는 사전에 통합경기시스템에 경기인 등록 및 참가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미제출 선수 및 학부모 등 관중의 벤치 착석을 불허하며, 퇴장 조치한다.
- ④ 각 팀 연령별 총 감독은 벤치착석은 가능하나 팀(선수) 은 불가하며, 위반 시에는 퇴장조치 및 스포츠평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⑤ 징계중인 「지도자, 임원」은 징계해제 이후부터 착석 및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 ⑥ 경기 중 지도자의 욕설, 훈계, 비방, 지적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선수들 플레이에 대한 격려 및 칭찬은 허용된다.
- ⑦ 경기 중 지도자가 선수들에게 욕설, 비난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심판 및 경기원의 판단으로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 i. 1차 : 구두 주의
 - ii. 2차 : 벤치 착석 금지 및 체육관에서 추방
- ⑧ 벤치 착석 금지 및 체육관에서 추방 조치를 받은 지도자가 불응하여, 3분 이내에 해당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출전포기(기권)로 간주하여 그 팀은 해당경기에 한하여 몰수 처리한다.

제 15조(제재 및 징계 등)

- ① 지역별 운영본부는 해당 리그와 관련된 징계를 담당한다.
- ② 경기장 내 폭언 및 폭력행위를 한 자는 퇴장 처리 후 해당 리그 주관단체(시도농구협회, 시군구농구협회)의 임원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7인 이내로 구성)에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 ③ 경기보이콧, 정당한 사유 없이 기권, 리그운영기간 도중 참가를 포기하고 무단이탈한 팀에 대해서는 경기일로부터 1년간 '농구 i-League'에 출전을 정지하며, 중대한 위반일 경우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할 수 있다.

※ 감독, 코치, 선수명단에 있는 선수 전원 해당

- ④ 현장에서 사전검인 시 부정선수가 확인되면 부정선수를 제외하고 해당 경기는 정상으로 진행하되, 부정선수와 팀은 1년간 해당 리그에 출전을 정지한다.
- ⑤ 경기 중 및 종료 후 부정선수가 최종 확인될 경우, 부정선수와 팀은 1년간 해당 리그에 출전을 정지한다.
- ⑥ 몰수경기 또는 기권의 경우 스코어는 20:0으로 처리한다. 단, 몰수경기 또는 기권승의 경우 경기장 내에 입장하여 심판에 의한 승자선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⑦ 경기 중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해당 지역 운영본부에서 상황을 판단하여 결정사항 통보 후, 10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몰수패(20:0패)로 처리한다.
- ⑧ 타임 요청 후 정식으로 진행되는 질의가 아닌 지나친 언행 및 항의를 하는 감독, 코치에 대해서는 1차 경고 후 재발 시 퇴장 조치한다.
- ⑨ 선수, 감독, 코치가 퇴장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1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⑩ 학부모로 인한 소란, 코트 난입 등으로 경기가 3분 이상 지체되는 경우 해당 팀은 해당 리그 주관단체 또는 대한민국농구협회의 징계규정에 따라 모든 대회 및 리그에 최대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 ⑪ 관중이라도 경기를 방해하는 행위 시 퇴장시킨다.
- ⑫ 리그기간 중 긴급을 요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역 운영본부에서 결정하고, 발생경위 및 처분에 대하여 사후에 대한민국농구협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 ⑬ 본 규정 제15조에 해당되는 경우와 이외 문제 상황 발생 시에는 해당 리그 주관단체 임원으로 구성된 소청위원회에서 논의하여 처리하며, 과도한 행위나 이외에 문란행위는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회부·의결할 수 있다. 또한, 시도농구협회와 시군구농구협회는 경위서와 처분 결과를 대한민국농구협회로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제 16조(제소) 경기 중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의제기는 선수가 경기종료 때 주심이 기록지에 서명하기 전에 즉시 서명하여야 하며, 30분 안에 팀은 그 경우의 설명 문서를 지역 운영본부에 제출하면 이의 신청에 대한 업무는 해당 리그 소청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7조(심판)

- ①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발행하는 심판자격증을 취득한 후 협회에 심판 등록이 되어있는 자에 한하여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전 종별, 2심제로 진행한다.

제 18조(경기원)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며, 2027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농구협회가 발행하는 경기원자격증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 ①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발행하는 경기원자격증을 취득한 후 협회에 경기원 등록이 되어있거나, 대한민국농구협회가 발행하는 심판자격증(3급 이상)을 취득한 자에 한하여 경기원 및 통계원으로 리그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9조(선수의 출전 및 장비)

- ① 출전 선수는 반드시 신분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학교생활기록부 포함)을 지참하여 경기 개시 30분 전에 감독관 및 경기원으로부터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되거나 변형, 위조가 의심되는 등록증으로 판단될 경우 검인할 수 없다.
- ② 각 팀은 주 유니폼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양 팀의 유니폼(상의, 하의) 색상이 동일한 경우 코인 토스나 추첨으로 결정하여 팀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부득이 보조 유니폼 교체 착용이 어려운 경우 지역별 운영본부에서 조끼 착용에 대해 결정한다. 단, 유니폼이 아닌 다른 옷을 입을 경우 몰수패를 선언한다.
- ③ 출전선수는 번호가 적힌 유니폼을 착용하되, 0번~99번 내의 번호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 ④ 각 팀 유니폼에 담배, 주류 등의 유·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 부착은 불가하다.
- ⑤ 출전 선수의 유니폼 번호는 반드시 경기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번호와 동일해야 한다. 동일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오더지에 명시되어 있는 등번호를 기재하고 출전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선수는 해당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만일 경기 도중에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퇴장 조치하여 해당 경기의 참가를 금하되 다음 라운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⑥ 출전선수는 실내용 농구화만을 착용할 수 있으며, 부드럽고 경량의 폭신한 물질로 만들어진 머리보호대, 안면보호대, 무릎과 팔 보호대와 같은 위험하지 않은 보호장비는 허가된다.
- ⑦ 모든 선수는 시계·반지 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착용할 수 없다. 단, 유리 및 금속재질로 제작된 안경테 외의 보호안경은 착용이 가능하다.

제 20조(재경기 실시)

- ① 불가항력적인 사유(경기장 대관 상황, 정전에 의한 조명 문제 등)로 인해 경기중단 또는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기를 순연경기라 하고, 순연된 경기의 개최를 재경기라 한다.
- ② 득점자가 있을 때는 중단시점에서부터 잔여시간만의 재경기를 갖는다.
i.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 중단 시점과 동일해야 한다.
ii. 순연경기에서 발생한 모든 기록(득점, 도움, 파울 등)은 유효하다.
- ③ 득점자가 없을 때는 경기를 새로 시작한다.
i. 출전선수 및 교체대상 선수의 명단은 순연경기과 동일하지 않아도 된다.

- ii. 경기기록은 순연경기에서 발생한 경고, 퇴장 기록만 인정한다.
- ④ 재경기는 해당 지역 운영본부가 결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실시한다.
- ⑤ 심판 및 경기원은 교체 배정할 수 있다.

제 21조(안전사항)

- ① 본 리그는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주최자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였으며, 경기 중 발생한 부상선수는 가입된 보험 약관에 한하여 보상한다.
- ② 지역별 운영본부는 현장에 구급차 1대와 의료진(간호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자격증을 보유한 자) 1명 이상을 대기시키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인근병원으로의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모든 경기가 종료될 때까지 구급차와 의료진은 현장을 벗어나서는 안 되며, 미배치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리그 주관단체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 ③ 경기 중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 현장의 의료진은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고 리그 관리자는 이를 대한민국농구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024 운영매뉴얼 내 양식 첨부

- ④ 대회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참가팀에서 반드시 의료적으로 신체에 이상이 없는 선수(심장 및 호흡기 질환 등 의료적 이상이 없는 선수)를 출전시켜야 한다.
- ⑤ 참가팀은 선수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소속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경기 출전 전 반드시 건강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 ⑥ ③, ④항 및 참가선수, 참가팀의 귀책사유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선수 및 팀에서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

제 22조(유의사항)

- ① 당일 경기에 참가하는 팀은 타당한 사유 없이 경기 시작시간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실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단, 납득할만한 사유로 경기 개시 때까지 경기장에 도착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 운영본부에서 결정한다.
- ② 참가팀은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하여 최선을 다해 모든 경기에 임해야 하며, 승부조작 등 어떠한 부정행위에 관여하거나 연루되지 않아야 한다.

제 23조(기타)

- ①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리그 주관단체나 대한민국농구협회에서 결정 및 시행할 수 있다. 끝.